

#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## (박태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-56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2. 9. 26.

발의자 : 박태순 의원 외 13명

### 1. 제정이유

-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28조에 따라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)
-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(안 제2조)
- 이용대상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 ~ 제4조)
-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)
-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)
-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 및 제9조)

### 3. 제정 조례안 : 붙임1

### 4.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2

### 5. 예산수반사항 : 붙임3(비용추계서)

### 6. 입법예고 결과 : 붙임4(의견서)

- 제출의견 1건

### 7. 기타 참고사항 : 붙임5(관련부서 검토의견)

## 붙임1

#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28조에 따라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 및 기능) ①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(이하 “세탁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세탁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세탁소 관리 및 운영 전반
2. 작업복 수거, 세탁, 건조, 배송 등 원스톱 서비스 실시
3. 그 밖에 세탁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이용대상) ① 세탁소의 이용대상은 안산시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소속 노동자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아닌 안산시 소재의 사업장이나 소속 노동자도 이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.

제4조(이용료) ① 시장은 세탁소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.

② 시장은 세탁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행사 기간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 장기고 기한정한수증라. 15년.

③ 그 밖에 세탁소의 이용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5조(관리 및 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·단체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이용료를 세탁소의 관리와 운영 및 노동자복지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서 정한 용도와 방법에 따른다.

제6조(운영지원 등)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세탁소 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규정 등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세탁소, 장비, 비용 등을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
③ 수탁자는 세탁소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④ 수탁자는 세탁소의 유지와 관리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제8조(양도 및 전대금지) 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. 다만,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9조(위탁계약의 해지)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세탁소 유지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

2.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

3. 제7조 및 제8조를 위반한 경우

4. 그 밖에 시장이 세탁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사유와 해지 일자를 기재하여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.

제10조(지도 · 감독 등)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세탁소 운영과 관련하여 조사하거나 필요한 서류와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와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정 요구나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1조(손해배상 등) 시장은 수탁자나 사용자가 세탁소의 시설과 장비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속		안산시의회
읍 안 자	시 의 원	박태순 의원 대표발의 (행정 3561)

#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제9-56호
----------	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2. 10. 11.  
제 안 자 : 기획행정위원장

## □ 수정이유

-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하여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이용료 감면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 하고,
- 상위법 저촉 우려가 있는 조항을 삭제 함.

## □ 주요골자

- 수급자 및 장애인에 대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신설 (안 제4조제2항)
- 세탁소 이용료에 관하여 시장에게 위임한 사항 삭제 (안 제4조제3항)

#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 
수정한다.

안 제4조제2항 중 “세탁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행사 기간에는” 을 “다음  
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”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 
제3항을 삭제한다.

1.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행사 기간
2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3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원 안	수정안
제4조(이용료) ① (생 략) ② 시장은 <u>세탁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행사 기간에는</u>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 <u>&lt; 신설 &gt;</u>	제4조(이용료) ① (원안과 같음) ② --- <u>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</u> --- -----.  <u>1.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행사 기간</u> <u>2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</u> <u>3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</u>
<u>&lt; 신설 &gt;</u>	<u>&lt; 삭제 &gt;</u>
<u>&lt; 신설 &gt;</u>	
<u>③ 그 밖에 세탁소의 이용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u>	